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6 선고 2019가합54446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

담당변호사 김상훈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

변론 종결 2020. 11. 25.

판결 선고 2020. 12. 16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,755,934원 및 그 중 698,327,744원에 대하여 2019. 6. 26.부터 2019. 8. 28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판사이민수

판사김선아

판사이민영

별지